

다 대전대신2구역 2단지 공공임대(5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기본 안내사항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 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07.17(수)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공급신청자격자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665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7.17 현재 만 19세(2000.07.17 이전 출생)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가 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단, 금회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주택형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불가)

- 본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가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m²이하 주택)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 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이 아닐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 하시어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 사무실에 내방하셔도 신청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 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Ⅲ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IV.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등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예비자 계약안내
일 시	2019.07.24(수) (10:00~17:00)	2019.07.30(화) (17:00 이후)	2019.08.06화) (10:00~17:00)	# C E J
장 소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 동구 우암로 250, 5층)	별도통보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됨

1. 공급대상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46번길 120, 이스트시티 2단지

■ 대상: 대전대신2 2블록 5년공공임대주택 20~24층 3개동 전용면적 60㎡이하 총 406세대의 예비입주자

				세대당 주택면적(m²)			공유		공급세대	대수				
블록	주택형	주택	발코니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대	대지		71 7	예비	최고	최초 입주				
		타입	타입	타입	- 우거 우거 기타 시 아 드ㄱ	면적 (계)	면적 (m²)	계		입주자 모집규모	층수	시기		
	Я							96	10	40	-			
2BL	039.9000A	39A	비확장	39.90	24.7352	3.6440	25.1298	93.4090	27	96	10	40	24	'18.10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는 18층~24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주택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유형에 따른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5년 공공임대주택

- (개 요)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
- (분양전환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이자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월 임대료
2	039.9000A	39A	23,000,000	4,600,000	18,400,000	340,00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충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2	039.9000A	39A	24,000,000	120,000	47,000,000	220,000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2	039.9000A	39A	13,000,000	43,330	10,000,000	383,330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합니다.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주택도시기금
2	039.9000A	39A	134,837	45,978	88,859	86,700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 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인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① 건설원가와 ②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감정평가금액: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항목별 산출방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4.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 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 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 일수에 연체료(연체이율 현재 6.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신청자격

 Π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7.17 현재 만 19세(2000.07.17 이전 출생)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금회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주택형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불가함
 - ※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mark>양권등 포함</mark>)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 와 동일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 :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ㆍ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금융결제원 통보),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됨
 - ㆍ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동 주택의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충남남부권 주거복지지사로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소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예비자 당첨 이후, 동호를 배정받으시면 예비순번 연기가 불가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통보 예정)

 ${
m I\hspace{-.1em}I\hspace{-.1em}I}$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등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2019.07.24(수)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동별·충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음

신청 방법[인터넷 · 모바일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PC)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 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청약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APP 명칭 : 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ISO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 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u>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u>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 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 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불가, 계약취소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V

예비자 발표 일정 등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장 소(서류제출)
2019.07.30(화) 17:00 이후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2019.08.06(호) (10:00~17:00)	자격(주택소유여부) 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순번대로 별도 안내예정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 당첨자 확인방법

- ① 인터넷 조회 : LH 청약센터 \rightarrow (공인인증서 로그인) \rightarrow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rightarrow 당첨자 조회
- ② 당첨자 전화자동응답(ARS): ☎ 1661-7700
- ※ 예비입주자 당첨순번은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으로 입주 대기순위가 부여되므로 당첨순번과 실제** 대기순위는 다를 수 있음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미계약 동·호 또는 공가 발생 시 개별 연락하여 계약 안내함.

서류제출 안내 (예비입주자)

-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일(2019.08.06)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mark>입주자모집공고일</mark> (2019.07.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됨.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여, 신 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함(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17 =	민이성		
시큐	류유형	케다니크	나라 레츠메사 미 오이니치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SIIO)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개
0		신청자 본인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0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0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계약이 거부됨. ※ 동의서는 공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세대원 전원이 동행 가능할 경우 서류제출일에 오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0	신청자의배우자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대리 제출 시 :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분) 추가 제출 (인감증명서를 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경우 위임장에 신청자의 서명 기입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임차권 양도 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 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확인방법

V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 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VI

기타 유의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부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계약불가),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접수일부터 계약 후 거주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매매, 경매 등)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계약종료 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람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지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신청자,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 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기타사항

■ 시행사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남해종합개발 (408-31-61340)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129-82-10595)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대전대신2지구 2블럭	2016.09.2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차로는 2차로(왕복), 출입구 높이는 1층 3.6m, 2층 3.5m입니다.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장소



■ **주소**: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50, 나로프라자 5층)

- ㅇ 주차안내: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가양네거리, 가양초등학교 정류장 앞

■ 임대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2 042) 470-0200

2019.07.17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